

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010
----------	------

2023년 9월 11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3년 8월 14일, 박 석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
다. 상정일자 : 제32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3년 9월 11일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박 석 의원]

가. 제안이유

- 도시숲 등의 조성을 통해 시민의 보건과 휴양 증진에 기여하고,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,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 및 증진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도시숲 등을 조성·관리하도록 함.

나. 주요골자

- 1) 시장의 책무 신설(안 제5조).

2)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용어 변경(안 제13조).

3) 도시숲지원센터 수행사업 중 관리지포 운영과 도시숲등 측정·평가 분리 및 신설(안 제29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포 참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을 통해 시민의 보건과 휴양 증진에 기여하고,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,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 및 증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도시숲 등을 체계적으로 조성·관리하기 위한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도시숲법”)은 산업화·도시화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,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현상의 빈발 등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도시숲, 생활숲, 가로수의 확대 등 조성·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.
- 도시숲법 제정 후 서울시의회에서는 도시숲, 생활숲, 가로수(이하 “도시숲등”)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2021년 제정하여 2022년부터 시행¹⁾ 하고 있음.

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·공간 확보, 기반 조성 노력 및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수립·시행 등을 정하고 있으며, 동 조례에서도 제5조 시장의 책무를 통해 이를 명시하고 있음.

- 안 제5조는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로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며, 탄소

1) [시행 2022. 7. 1.] [서울특별시조례 제8300호, 2021. 12. 30., 제정]

흡수 기능을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·관리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신설한 것으로, 기존의 물리적인 ‘토지·공간 확보’와 정책적인 ‘조성·관리 활성화’ 이외에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적인 부분을 추가한 것으로써 시의적절하다 판단됨.

-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폭염과 화재²⁾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 7월 27일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(global warming) 시대가 끝나고, 지구 열대화(글로벌 보일링, global boiling) 시대가 도래했다고 밝힌바, 서울시에서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계획 및 환경설계 측면에서 도시숲 조성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시기로 판단됨.
- 안 제29조는 도시숲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현재 ‘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·평가와 운영’으로 된 것을 ‘관리지표 운영’과 ‘도시숲등 측정·평가’로 분리하여 체계적인 운영 및 평가를 도모하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.

2) 폭염 : 이탈리아, 스페인, 그리스, 튀르키예 등 유럽 최고기온 기록.

유럽 연합의 기후 감시 서비스 코페르니쿠스(“2023년 6월은 역사상 가장 더운 6월”)

화재 : 2023년 4월(캐나다 산불), 7월(그리스, 이탈리아 산불), 8월(하와이 산불), 2019년(호주 산불), 2023년 4월(충남, 충북 지역 중심 서부지역 산불), 4월(강릉 산불)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통해 시민의 보건·휴양 증진에 기여하고,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,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·증진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조성·관리심의위원회”를 “조성·관리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29조제1호 중 “관리지표 측정·평가와”를 “관리지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도시숲등 측정·평가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시장의 책무) (생 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〈신 설〉</u></p> <p>제13조(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) ① 시장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숲등 <u>조성·관리심의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~ 4. (생 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② (생 략)</p> <p>제29조(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·운영 등)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도시숲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도시숲등 <u>관리지표</u> 측정·평</p>	<p>제5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② <u>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통해 시민의 보건·휴양 증진에 기여하고,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,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·증진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3조(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--- <u>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</u>----- -----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9조(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·운영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----- <u>관리지표</u> -----</p>

가와 운영

<신 설>

2. ~ 6. (생 략)

2. 도시숲등 측정·평가

3. ~ 7. (현행 제2호부터 제6호
까지와 같음)